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일반·전문약품 특성에 맞도록 품목 갱신 제출자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간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반영하여 「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아울러, 동 개정 규정은 우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→ 법령/자료 → 제개정고시 등)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「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고시 제2021-78호, 2021.9.17.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본부(54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2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, 보건복지부장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, (재)약학정보원장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장,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장

주무관 김정현 사무관 이겨레
의약품관리과 전결 2021.9.17.
장 김남수

협조자

시행 의약품관리과-7300 (2021. 9. 1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58 팩스번호 043-719-2650 / junghyunkim@korea.kr / 대국민 공개